

**제52조의3(지정 · 승인 · 인가의 취소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시행자(제49조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 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·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, 공작물의 개축, 이전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 · 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2. 29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(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
 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(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
 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(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(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
 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6.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0. 2. 4.]

**제53조(물류단지의 관리기관)**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다)에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[전문개정 2015. 12. 29.]

**제54조(물류단지의 관리지침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(이하 "물류단지관리지침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시 ·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물류단지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③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5조(물류단지관리계획)** ①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  2.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6조(공동부담금)** ① 삭제 <2010. 2. 4.>

-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, 가로등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 ·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>